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미래도 파밀리에 입주자모집공고(본청약) 정정안내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미래도 파밀리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안내합니다.

구분	ŧ	내 용
소형저가	기존 (31p)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 • "소형・저가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 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아파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경우 나.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호(단독주택) 및 제3조제1항제2호(연립주택) • 제3호(다세대주택)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소영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인 경우 • 별표 1 제1호가목2)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릅니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주택관 련	정	삭제 (입법예고 중으로 미적용)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미래도 파밀리에 입주자모집공고(본청약)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06.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Ж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55-4100

주택유형	해당지	역	기타경기 기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평택시 1년 이상 (2023.12.06. 이전특			이상 계속 거주자 전부터 계속 거주)	경기도 6개	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국	비규제지역		
재	당첨제한	전미	l제한	거주의무	기간	분양가상한제	l	택지유형	
10년		3	년	3년		적용		공공택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06.(금)	2024.12.16.(월)	2024.12.17.(화)	2024.12.18.(수)	2024.12.24.(화)	2024.12.27.(금)~ 2025.01.03.(금)	2025.01.06.(월)~ 2025.01.08.(수)

I

공통 유의사항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에 대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유의사항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은 민간 사전청약 방식으로 사전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2022.03.29)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선정한 후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이며, 본청약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06 입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되었던 건설호수, 주택공급가격, 건축규모, 세대평면, 입주예정일 등은 현재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사전당첨자 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향후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금번 본청약 공고에 별도 청약신청은 불필요하며,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동·호수 배정 후 동·호수가 결정됩니다.
- 동·호 배정 결과의 확인방법 : 청약홈>민간사전청약>당첨조회(당첨자발표일부터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세대 내 주택 수는 사전당첨자 모집공고일(2022.03.29)부터 본청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까지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세대 내에서 주택을 추가로 소유하는 경우 사전당첨자격이 취소되고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다만, 상속을 받아 주택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외)
- 공급계약 체결의사를 확정한 사전당첨자는 본청약 당첨자발표일(2024.12.24)을 기준으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제한, 향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1순위 청약신청 제한 등 당첨유형에 따라 본청약 당첨자와 동일한 각종 청약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실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금회 공급세대는 지난 사전공급계약 이후 미계약, 사전당첨 지위 포기 및 부적격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는 분양상담전화(1555-4100)**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래도 파밀리에의 분양상담 및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건경사력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	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	- 금 충족	1순위(12기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구분없이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화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고덕미래도파밀리에.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 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합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Х				

※ 다.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0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해당 지구는 평택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하나,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3.12.06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24.06.06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를 공급(평택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물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및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2.16(월)	2024.12.17(화)	2024.12.18(수)	2024.12.24(화)	2024.12.27.(금)~ 2025.01.03(금)	2025.01.06(월)~2025.01.08(수)
1 49 71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2)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주택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 및 거주의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3년
거주의무기간	3년	3년

-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2에 의거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이상 100%미만에 해당하여 3년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며,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 할 수 없으며, 거주의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Ш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청 주택과 - 51236호(2024.12.06(급))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고덕택지개발지구 A-50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3층 10개동 총 642세대 중 사전청약 181세대, 본청약 461세대(특별공급 190세대, 일반공급 2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190세대(기관추천 23세대, 다자녀가구 46세대, 신혼부부 52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55세대) 포함]

■ **입주시기**: 2025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즈테 청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사전당첨자	본청약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전용면적기준)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배정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84.9499A	84A	84.9499	24.1783	109.1282	60.8336	169.9618	63.3747	262	71	191	15	19	34	6	37	111	80	15
2024000664	02	084.9413B	84B	84.9413	25.2350	110.1763	60.8275	171.0038	63.3683	145	48	97	8	10	18	3	18	57	40	8
202400004	03	099.8879	99	99.8879	27.8940	127.7819	71.5309	199.3128	74.5189	235	62	173	-	17	-	5	-	22	151	12
		합 계						642	181	461	23	46	52	14	55	190	271	35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이하에 대한 단수정리 값이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각 면적은 소수점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별 비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소수점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에서 단수조정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사전청약기준)	084.9508A	084.9927B	099.9609
주택형(본청약 기준)	084.9499A	084.9413B	099.8879
견본주택 등의 약식표기	84A	84B	99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분		84A	84B	99	합 계		
	국기	가유공자	3	2	2 -			
	장기복·	무 제대군인	3	1	-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1	-	4		
기관추천 특별공급		경기도	2	1	-	3		
	장애인	서울특별시	1	1	-	2		
		인천광역시	1	1	-	2		
	중소기	업 근로자	2	1	-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50%)	10	5	9	24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 인천, 전국 거주자(50%)	9	5	8	22
	신혼부부 특별공급	34	18	-	52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6	3	5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37	18	-	55
	합 계	111	57	22	19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E1.01	77	*	41 F L		공급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타입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FILTINI	ᄁᄎᄓ	ㅂ기기+! 네	합계	1회(10%)	1회(20%)	2회(20%)	3회(20%)	입주지정일
(774/1)	\ \-\ \-\ \-\	l 正	^ -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입계	계약시	25-03-18	25-05-18	25-07-18	[급구시경철
		1층	11	197,143,840	288,756,160		485,900,000	48,590,000	97,180,000	97,180,000	97,180,000	145,770,000
		2층	11	197,143,840	299,456,160		496,600,000	49,660,000	99,320,000	99,320,000	99,320,000	148,980,000
84A	262	3층	15	197,143,840	310,156,160		507,300,000	50,730,000	101,460,000	101,460,000	101,460,000	152,190,000
04A	202	4층	15	197,143,840	320,956,160		518,100,000	51,810,000	103,620,000	103,620,000	103,620,000	155,430,000
		5-10층	90	197,143,840	331,656,160		528,800,000	52,880,000	105,760,000	105,760,000	105,760,000	158,640,000
		11층이상	120	197,143,840	339,756,160		536,900,000	53,690,000	107,380,000	107,380,000	107,380,000	161,070,000
		2층	8	197,123,930	294,276,070		491,400,000	49,140,000	98,280,000	98,280,000	98,280,000	147,420,000
		3층	8	197,123,930	304,876,070		502,000,000	50,200,000	100,400,000	100,400,000	100,400,000	150,600,000
84B	145	4층	8	197,123,930	315,476,070		512,600,000	51,260,000	102,520,000	102,520,000	102,520,000	153,780,000
		5-10층	48	197,123,930	326,076,070		523,200,000	52,320,000	104,640,000	104,640,000	104,640,000	156,960,000
		11층이상	73	197,123,930	334,076,070		531,200,000	53,120,000	106,240,000	106,240,000	106,240,000	159,360,000
		1층	11	231,810,830	316,808,336	31,680,834	580,300,000	58,030,000	116,060,000	116,060,000	116,060,000	174,090,000
		2층	11	231,810,830	328,444,700	32,844,470	593,100,000	59,310,000	118,620,000	118,620,000	118,620,000	177,930,000
99	235	3층	12	231,810,830	340,171,973	34,017,197	606,000,000	60,600,000	121,200,000	121,200,000	121,200,000	181,800,000
99	233	4층	12	231,810,830	351,808,336	35,180,834	618,800,000	61,880,000	123,760,000	123,760,000	123,760,000	185,640,000
		5-10층	72	231,810,830	363,444,700	36,344,470	631,600,000	63,160,000	126,320,000	126,320,000	126,320,000	189,480,000
		11층이상	117	231,810,830	372,171,973	37,217,197	641,200,000	64,120,000	128,240,000	128,240,000	128,240,000	192,36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의 골조공사 완료 시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고, 현장 공정상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발코니확장을 개별 선택, 제외할 수 없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충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충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주택형 표기는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별 비율로 나누어 산정하였으며, 소수점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에서 단수정리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계획변 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절리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 일 전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 금융 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취급기관과 별도의 중도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 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 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해당하는 ※ 2024.03 ※ 특별공급 다만 20 당첨자발 ■ 최초 입 ■ 특별공급 - 기관추천 - 노부모투 ■ 최초 입 - 기관추천 ① 청약이 ② 청약투 ③ 주택청	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 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 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여 구 당첨자발표일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단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적	배한 예외) 발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 네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및 분분 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 정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료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경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는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적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적 보다 전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호 보다 당첨자 보다 전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호 보다 당첨자로 보다(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요건	경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024.03 ※ 특별공급 다만 20 당첨자발 ■ 최초 입 ■ 특별공급 의 최초 입 - 기관추천 - 노부모투 ■ 최초 입 - 기관추천 - 기관추천 ① 청약이 ② 청약투 ③ 주택청	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시 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구 당첨자발표일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반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 세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보 분 인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희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을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학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학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합 모르 병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요건	경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2024.03 ※ 특별공급 다만 20 당첨자발 ■ 최초 입 ■ 특별공급 의 최초 입 - 기관추천 - 노부모투 ■ 최초 입 - 기관추천 - 기관추천 ① 청약이 ② 청약투 ③ 주택청	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시 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구 당첨자발표일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반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 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 세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보 분 인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희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을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학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학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합 모르 병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요건	경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용급기준	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A D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구 당첨자발표일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 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런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 세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보 분 분 변 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을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을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학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학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합 모르 병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요건	경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	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여 구 당첨자발표일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 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내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보 분 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료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는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지 합니다. 당첨자결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요건	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처리방법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명(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공급기준 당첨자발 최초 입 ■ 특별공급 최초 입 - 기관추찬 - 노부모투 최초 입 - 기관추찬 - 노부모투 최초 입 - 기관추찬 - 청약이 ② 청약투	구 당첨자발표일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변분 인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희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호 모르 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형원 요건	처리방법 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	당첨자발표일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변이 다른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호 모르 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형원 요건	하며, 당첨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하며, 접수일시 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형(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	발표일이 같은 주택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분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료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호 모르 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형원 요건	하며, 접수일시 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명(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 ■ 특별공급 ■ 최초 입· - 기관추천 - 노부모투 ■ 최초 입 - 기관추천 ① 청약0 ② 청약투 ③ 주택청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료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형 모르 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형원 요건	명(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두 부적격 처리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 ■ 특별공급 ■ 최초 입· - 기관추천 - 노부모투 ■ 최초 입 - 기관추천 ① 청약0 ② 청약투 ③ 주택청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특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취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성원 요건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기관추천 - 노부모투 ■ 최초 입 - 기관추천 ① 청약0 ② 청약투 ③ 주택청	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의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려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어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 성원 요건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노부모투 ■ 최초 입 - 기관추천 ① 청약0 ② 청약특 ③ 주택청	전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 ² 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 주 요건	성원 요건	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① 청약0 ② 청약5 ③ 주택청		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 청약0 ② 청약년 ③ 주택청	선(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									
② 청약 ③ 주택청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② 청약 ③ 주택청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③ 주택정										
0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노무보투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 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 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0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 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자격요건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평택시 및 기타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ㅁ드며저	1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 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① 지역 : 해당 지역 거주	F자 50%(평 택 쟁 발생 시 해	ぱ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및	경기도 6	l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 50%(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서울,인천, 전국 거주자) 거주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해당 지역 거주자가 낙첨되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와 경쟁시 지역우				
당첨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선정방법	<u></u> 계	100	<u>기</u> 正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명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 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경(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 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1년 이상 ~ 5년 미만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 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에 납누시도답응모듈 현재까지 게득하여 기수한 기단할 단응]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		
		1년 이상 ~ 5년 미만	5	를 해당 시·도로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가족관	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	우 자녀기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2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	이나 주민등	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5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20%, 기타지역(전국)에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50% 순으로 우선공급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 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12.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그국 1 군	미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비고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u =	-01 	건축물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부동산	부동산 3억3,100만원		干当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물+토지)	이하	이하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괸	·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내용

IV-4

구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		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7	 주하는 무주택세대주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COM 이상의 국제는국(국구자의 국제는국 포함)을 하는 이상 계곡이와 무상(ᇀ은 제대을 부분성학교성은 제 성제되어 있는 성구에 분함)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2개의 이사 계소 기기	로마, 2007 - 카타마어 기조미(저그) 5007 -	XO= 0477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 (경기도						
	■ ②가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l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	급에 관안 규식」 열표15 	4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당첨자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선정방법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T00H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35	1명	10	5명	30			
	© 18-141	33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입주자저축	4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합산하	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	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잉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	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	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공공택지 기준) 범위 : 5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고 ※ (예외) 2024.03.25. △ 「주택공급에 관한 규 - 청약통장 가입기간 1. ● 아래 '가' 또는 '나'에 - 가. 혼인 중이거나 미 - 나. 1인 가구(혼인 중) * 1인 가구는 추첨제로 * '단독세대'란, 단독세 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 ■ 「생애최초 주택 특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 과거 1년 내에 소들	"입하는 분 가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 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 해당하는 분 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라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 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미 '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 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당하는 분 액 이상)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분)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배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당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 ①소득구분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	
	단계	소득구분	내용
당첨자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선정방법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008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5단계	ᄎᅒ고그	추첨공급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3단계 	Тёбы 	101 717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
		1인 가구	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50% 순으로 우선공급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4.12.06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エライモ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년 기구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3,456,941원 ~14,481,615원 13,456,942원~ 14,481,616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비고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 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 건축물가액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건축물	~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十当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토지	단, 아래 경우 * 「농지법」제23 * 「초지법」제23 * 공부상 도로, * 종중소유 토지 사실관계를 1	우는 제외 E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된 E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0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하 입증하는 경우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함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때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급(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구분		l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경: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기타지역)에	거주 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에시ㅁㅋ]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평택시 및 기타지역)			
	구 분 전용면적 85m [*] 이하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청약통장 자격요건				(평택시 및 기타지역)			
	전용면적 85m' 이하	300만원	250만원	(평택시 및 기타지역) 200만원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 기타경기지역 거주자(**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0**% → 기타지역 거주자(전국) 50% 순으로 우선공급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전용면적 85m² 초과	-	100%

가전하모 가전사하 가전구부 전스 가전구부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 14	가 섬앙목	가설	l상안	가심구분	섬수	가심구문	심수 삼수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2년 이산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산 ~ 3년 미만 8 12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 1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5년 미만 30 16년 이상 ~ 7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17년 이상 ~ 8년 미만 16 18 19 10 5명 30 18 1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년 이상 ~ 12년 미만 26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2년 이상 ~ 14년 미만 28 12년 이상 ~ 15년 미만 30 12년 이상 ~ 12년 미만 16 12년 이상 ~ 12년 미만 16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 12년 이상 32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 12년 이상 35 12년 이상 35 12년 이상 35 12년 이상 35 12년 이상 ~ 12년 미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8 14년 이상 ~ 13년 미만 28 1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 5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4년 이상 ~ 8년 미만 16 16 17년 이상 ~ 8년 미만 16 17년 미만 17년 미만 18 18년 이상 ~ 9년 미만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38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4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14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14년 이상 ~ 7년 이상 32 16년 이상 ~ 7년 미만 16 16 17년 이상 ~ 8년 미만 16 18 18 1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	①무주택기간	3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4 15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17년 이상 - 8년 미만 16 16 25 4명 25 1명 1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3명 20 5 1원 기간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①무수택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년 이상 ~ 8년 미만 16 16 25 25 26 25 26 25 26 25 26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 日명 10 5명 30 고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 6명 이상 35 3명 20 3명 20 5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1년 이상 ~ 8년 미만 9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15년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15년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4년 미만 1 1년 이상 ~ 15년 이상 17 1년 미만 1 1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15년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이상 ~ 1년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2		35		0명	5	4명	25
15 15 15 16명 이상 35 3명 20 39 20 39 20 30 39 20 30 39 20 40 30 30 30 30 5 39 20 6개월 미만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Sulfart				2명	15	6명 이상	35
17				3명	20		
*** Page 14 *** Page 14 *** Page 15 *** P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보인 보인 3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사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1년 미만 1 2년 이상 3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가입기간 1/ 1년 이상 ~ 1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③인주자저축		본인		5		14
SE 이상 ~ 6년 미만		17			6		15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718712						16
배우자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01년 이상 ~ 2년 미만21년 미만12년 이상3					8	15년 이상	17
매우사 1년 미만 1 2년 이상 3					9		
1년 미만 1 2년 이상 3			배우자		0		2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11 1 - 1		<u> </u>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 2 + 3		

당첨자 선정방법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구 분	ч в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VI 7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12.16(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현장접수)사업주체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2번지
OLHLAT	1순위	2024.12.17(화)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일반공급	2순위	2024.12.18(수)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 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 (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 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서비스 이용은 선택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12.24(화)~ 2025.01.02(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4.12.24(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VII

※ 당첨자는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 일시 : 2024.12.27(금) ~ 2025.01.03(금) 7일간 / 10:00 ~16:00
	• 대상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예비당첨자
제출장소	•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2번지)
유의사항	※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확인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여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06.(금))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의무사항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공통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차의 확인서류: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 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자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 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내 비치)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배우자 분리세대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 행정복지센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신혼부부		0	부동산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특별공급		0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 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 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 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0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 리된 경우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직계비속	·피부양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0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전국 행정복지센터)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0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0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 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0	부동산 건물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0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 제출 대상자중 소유 부동산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 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0	재산세 납부내역서	본인 및 세대원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당첨된 경우 ·미등기 부동산으로 부동산 소유현황 발급이 불가한 경우
해외근무자	0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단신부임) 입증서류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0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 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0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0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제3자)		0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할 경우,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계약시 외국인의 구비서류는 공급신청시 구비서류와 동일함)
-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자격검증을 위해 상기서류 외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 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일반근로자 (계속근무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 소득 원천 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홈 택스)
	근무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 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자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홈택스)
		전년도 일부기간 휴직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정상근무 개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휴직	전년도 전체기간 휴직 후 금년 복직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월평균소득 추정이 불가능한 자 (계속 휴직)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본인과 동일한 직장/직급/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홈택스)
자영 업자		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사업자 중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 (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홈택스)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①~② 해당직장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세무서(홈택스) ① 주민센터
	Н	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① 접수장소 ② 세무서(홈택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재직증명서 등 해당직장의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직인 날인이 없거나, 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되겨 이즈니크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쉐다지자/네ㅁ니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① 해당직장/세무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표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발급처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u>www.iros.go.kr</u>) ③주민센터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전국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주택공급에 관 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 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1. 수도권 : 1년
 -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 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서류	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본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고트니크		0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공통서류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 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10년 이상(또는 25년)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0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아래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은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청약Home'(www.applyhome.co.kr)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0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일반공급 (가점제) -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청 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주민등록표초본	피답야 되게즈스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0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0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0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기록 대조일: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0	혼인관계증명서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0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단신부임) 입증서류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0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 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받은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제3자)	0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에 대한 소명자료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여부,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2019.08.1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 기준 6개월 내 기간 중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청약신청자는 사업주체에 정식 발령공문 등에 의한 해외체류인지 단순 해외여행인지 여부에 대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 거주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용 주택도 주택으로 봅니다.
-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에 포함. 또한 어린이집 등도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분양권·입주권은 공급규칙 시행일(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관리처분계획·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되어 보유한 경우 주택으로 인정되며 시행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분양권 등 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 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 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 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 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VШ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기간	장소
당첨자 계약체결	일시 : 2025.01.06.(월) ~ 2025.01.08(수) (3일간 10:00~16:00)	견본주택(주소: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2)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 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계약시 구비서류 안내

	서류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당첨자 서류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본인 계약 시	0		계약금 입금증	-	• 견본주택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인감증명서 또는		• 용도 : 아파트계약용(※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0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0		인지세 (전자수입인지)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 내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불가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 사항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함
(본인 외 모두 제3자)		0	위임장	-	• 견본주택 내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단,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필요)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수협은행	1010-2279-7051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101동 202호 홍길동 → 101202홍길동)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 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 자격이 제한됩니다.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합니 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 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을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합니다.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1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으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및 제26조의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사업주체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함)
- 사업주체가 본 주택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사업 시행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 주체와 계약자는 연대하여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전자수입인지)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분양계약체결 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 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 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세액: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기재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매 가능함.
-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항 납부지연가산세의 내용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문서 중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함.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조건은 '**중도금무이자'** 조건으로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 다.(타 금융기관 미적용)
- 계약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한 중도금대출 신청 건에 한하여 중도금 대출 이자는 최초 입주지정일(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에서 대납(중도금무이자)하며, 최초 입주지정일 이후부터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통보할 의무가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알선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중도금 무이자)**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 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일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사업주체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 제2금융권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 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단, 향후「주택법」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함.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져야 함.(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 해 제한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 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전매 당사자간 작성한 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당사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 짐.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음. 또한 「주택법」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공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 금(80%)
구력 8	글꼬니 뉙이미ㅋ	계약시	25-03-18	입주지정일
84A	8,160,000	816,000	816,000	6,528,000
84B	4,490,000	449,000	449,000	3,592,000
99	8,480,000	848,000	848,000	6,784,000

[※]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의 골조공사 완료 시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등의 추가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고, 발코니 확장공 사의 경우 현장 공정상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발코니확장을 개별 선택,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배관공사비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설 치 위 치	설치개소	주택형	공급금액 -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 비고
丁世	글 시 ㄲ 시	크시/11소			계약시	2025-03-18	입주지정일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84A, 84B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배관공사비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개소	99	3,100,000	310,000	310,000	2,480,000	

[※] 본 아파트는 공정률 60% 이후의 골조공사 완료 시에 분양하는 후분양 아파트로 에어컨 배관공사의 경우 현장 공정상 이미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에어컨 배관공사를 선택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배관공사 금액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및 배관공사 금액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279-7176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상기 계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이며,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 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공급계약서 제3조의 연체료 규정에 따라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 체결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확장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 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3) 유의사항

ΙX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에어컨매립 배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틀 및 유리, 기타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시 이중창틀,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설 치 위 치	설치개소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十世		2시/11조	T 7 8	0804	계약시	2025-03-18	입주지정일	미끄
일반형	거실+안방	2개소	84A, 84B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거실+주방+안방	3개소	99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774	거실+안방+침실1+침실2	4개소	84A, 84B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고급형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개소	99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2) 가구 및 마감재 (단위: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적용사항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1 C	70/10	Tio	0 11 11	계약시	2025-03-18	입주지정일	ol 77:
현관	현관중문 (3연동 슬라이딩 도어)	84A, 84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20	전단성단 (3건등 골디에당 포에)	99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84A	2,000,000	200,000	200,000	1,600,000	
거실/복도	광폭마루 (설치위치 : 거실, 주방, 침실, 복도)	84B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기 리/국도	(= ::: := : : : /	99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복도팬트리	84A, 99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드레스룸+시스템가구	84A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안방/드레스룸		84B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99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침실1	붙박이장	84A, 84B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821	ᇀㅋ엑ᆼ	99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침실2	붙박이장	84A, 84B	800,000	80,000	80,000	640,000	
D 24	흔 기 에 더	99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욕실특화	공용욕실 (수전(세면기)+세면기+비데일체형양변기+ <u>선반형 욕조수전</u> +악세서리(니켈))	84A, 84B, 99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국 글국 의	부부욕실 (수전(세면기)+세면기+비데일체형양변기+ <u>선반형 샤워기</u> +악세서리(니켈))	84A, 84B, 99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미선택시 부부욕실 일반형 비데 설치

(3) 가전

구분	적용사항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TE		극하시장	170	0887	계약시	2025-03-18	입주지정일	미프	
주빙	주방쿡탑	하이브리드 쿡탑(인덕션2구+하이라이트1구) SK매직/ ERA-BHI			800,000	80,000	80,000	640,000	
	T84日	인덕션 3구	SK매직/ IHR-B3200	된다이	800,000	80,000	80,000	640,000	
주방	저기이브	SK매직	SK매직/ EON-B401SA		800,000	80,000	80,000	640,000	
Т6	전기오븐	삼성	삼성/ NQ50T8539BW	전타입	900,000	90,000	90,000	720,000	
	식기세척 기	삼성 12인용	삼성/ DW60T7065SS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기	삼성 14인용	삼성/ DW60BB815WAP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 상기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가전제품의 색상 및 모델은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계약자의 취향에 따른 색상 및 모델사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2279-7176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부PF금융센터

- 상기 계좌는주택도시보증공사 명의의 예금계좌이며, 상기 계좌 및 세대별 공급계약서상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납부도 정당한 분양수입금의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 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 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선택품목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하여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에 대한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 101동 1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이며,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어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 타공, 조명, 가구 구성 및 형태(시스템 가구 포함)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동등 사향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고 기능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전제품 추가선택품목은 세대 내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고, 가전 및 가구 도어의 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입주 시 개별 납부)
- 타일의 특성상 무늬, 색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 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 및 착수 이후 추가선택품목의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추가선택품목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적용되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타 가전제품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기 선정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될 수 있으나,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됩니다.
-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품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성능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하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 도어 및 손잡이는 본 공사시 사양과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및 대피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 난방 및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아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내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 그릴의 재질, 색상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그릴의 색상은 주동 색채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본 공사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해당 세대의 위치 및 층에 따라 상이한 실외기 그릴 색 상으로 시공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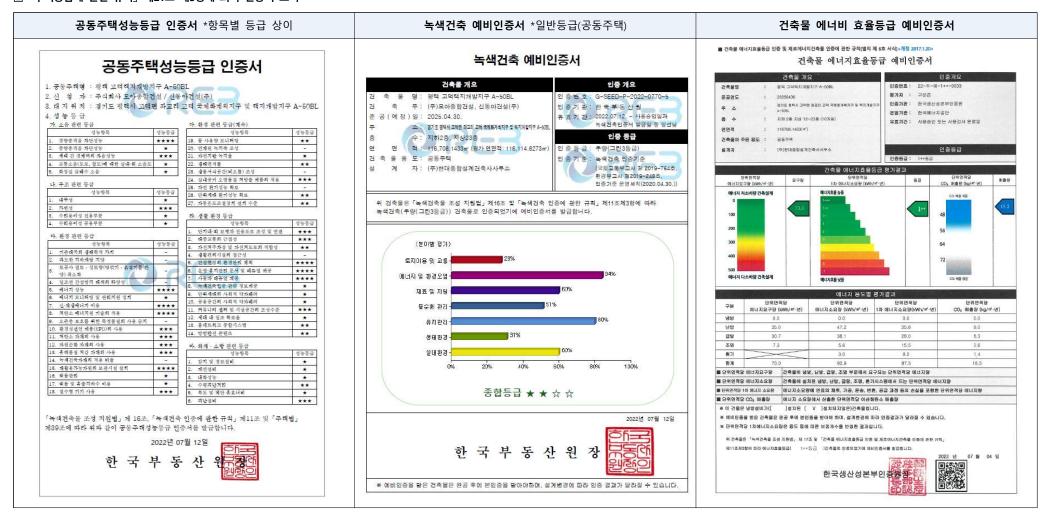
Χ

참고사항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제7조제2항제1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저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토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이지건축	㈜한양기술단	태인엔지니어링(주)
감리금액	2,373,776,900	530,206,600	806,192,650	44,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주택법」제57조 및「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적 용총 액		구	분	적용총액		구	분	적용총액	
		택지매입원가	100,249,978			철근콘크리트공사	33,017,254			위생기구공사	955,393
		기간이자	11,875,236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1,615,739
택지	[필요적 경비	4,962,858	4,962,858	조적공사	1,348,789		기계	가스설비공사	646,295	
		그밖의 비용	17,622,128			미장공사	2,585,180		설비	자동제어설비공사	182,649
		계	134,710,200			단열공사	885,143			특수설비공사	-
		토공사	1,756,236,870			방수, 방습공사	1,826,486			공조설비공사	-
		흙막이공사	-			목공사	2,964,527			전기설비공사	8,710,935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4,931,513	공사비	그밖의	정보통신공사	4,566,216
		옹벽공사	323,148			금속공사	4,987,712		공종	소방설비공사	5,900,955
		석축공사	-		-1-	지붕 및 홈통공사	730,594			승강기공사	1,194,241
		우, 오수공사	252,898	252,898 건축 창호공사 4,847,214		그밖의	일반관리비	11,591,163			
	토목	공동구공사	-	공사비		유리공사	1,194,241		공사비	이 윤	7,783,642
	_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42,150			타일공사	3,020,727		계		138,967,512
공사비		도로포장공사	266,948			돌공사	2,528,981		설계비		1,368,01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42,149			도장공사	1,545,489			감리비	3,735,092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1,053,742		일반	분양시설경비	10,762,810
		조경공사	3,793,472			수장공사	3,105,027	간접비	분담	금 및 부담금	7,642,657
		부대시설공사	140,499			주방용구공사	2,697,580			보상비	-
		공통가설공사	3,371,974			잡공사	2,037,235		기타 사업비성 경비		44,776,322
	건축	가시설물공사	3,371,974		기계	급수설비공사	1,475,239		계		68,284,891
		지정 및 기초공사	2,599,231		설비	급탕설비공사	1,545,489		그밖의	비용	20,285,696
		철골공사	-			오배수설비공사	1,531,438		합	계	362,248,300

[※]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주택법」제 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 목		심사결과금액	산출근거
		법정 택지이자	11,875,236,353	
	취득세	취득세	4,009,966,254	
	71-7/11	지방교육세	400,996,625	
		재산세	280,697,637	
	재산세	지방교육세	56,139,527	
택지비가산비		재산세도시지역분	196,488,346	
국시리기간 리	등기수수료	보수료	18,222,144	
	9/11/11	인지세	347,697	
		말뚝박기 공사비	11,618,864,385	
	흙믹	이 및 차수벽공사비	5,106,787,766	
		지역난방부담금	896,477,857	
	소 7	ᅨ (택지비 가산항목)	34,460,224,591	
	법정	^논 과 복리시설 건축비	926,599,747	
		홈네트워크	5,589,483,900	
	인텔리전트	초고속통신특등급	1,763,361,600	
	설비공사비	에어컨냉매배관	1,612,189,900	
		기계환기설비	2,223,663,200	
건축비가산비		후분양 기간이자	4,144,275,837	
	에너	지절약형 친환경주택	2,758,161,803	
	지하주	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773,346,200	
	법령 개정에 따른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186,428,000	
		분양보증수수료	333,098,062	
	소 ⁷	예(택지비 가산항목)	20,310,608,249	

^{※「}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고덕국제신도시 A50블록 미래도 파밀리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2024-0121-000091870	253,573,81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화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자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 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 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 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

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 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 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ΧI

단지여건 등

■ 공통사항

[공통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³)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실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징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인쇄상 오류 및 오탈자가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상 상충 부분이 있을 시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청약 및 계약 신청 전 반드시 현장여건, 주변 유해시설, 마감재리스트,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를 포함한 인근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 예정 시점과 다를 수 있음.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구/가전 구성 순서, 도어 개폐방향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과 무관한 사항임.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매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함.
- 외국인은 거소 요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공사 도중 기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설계와 시공상의 기술적인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용면적(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상의 증감이 있거나,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용면적(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할 예정이오니 추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과 관련하여는 추후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경미한 변경신고 사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서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경찰서에 분실신고(분실신고접수증 제출) 및 전국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위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사전방문 예약을 하신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함.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

「분양홍보물]

- 각종 광고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및 착공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따라 시공됨.(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사인물, 홈페이지, 카탈로그(공급안내)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 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분양자료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제작 시점, 여건 변화 반영 정도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하여 반드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 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 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와 기기 등이 사업승인도서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자료, 공급안내 등)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4B, 99 주택형이 설치되어 있음.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 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 가 심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되지 않은 주택형 및 타입에 대해서는 인허가 도서,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단지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 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창호 및 부속 철물류, 가구(시스템 가구 포함) 및 가전류, 벽체 및 바닥재, 샤워부스, 발코니 난간대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 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주방가구, 욕실가구, 욕실 거울, 욕조, 현관신발장 및 수납장, 파우더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주방상부장 등의 뒷면 및 바닥, 천장 등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건축마감재 시공 (몰딩, 걸레받이 포함)이 되지 않거나 파지타일로 시공될 수 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식기세척기,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및 기타 마감재(바닥 폴리싱타일, 안방 침실 벽체 판넬)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추가선택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추가선택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 시에만 설치되며,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 및 추가선택품목 선택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조사, 형태 및 마감재(하드웨어, 색상, 재질 등) 설치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세대 내 설치되는 가구 및 마감재 판넬 이음부위의 위치와 상세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타일 및 석재 등의 나누기 및 줄눈 두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 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시설물(DA,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바닥 마감 패턴, 높이 및 마감,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및 단지 레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외부 창호와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사양, 핸들, 외장재,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 주방가구는 확장옵션형으로 설치되었으며, 확장형은 주방가구 배치가 변경되고, 설치 수납 가구가 상이함.
- 세대 내외부 창호에 설치되는 유리는 동급 혹은 동급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세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유도등 및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견본주택 자체의 냉난방 설 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님.
- 견본주택에 세대 내에 설치된 아래 품목은 실시공시 제품사양,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설비기기 :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져, 온도조절기, 선 홈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액세서리, 각종 수전류, 스프링클러
 - 전기기기 :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월패드,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세대분전반, 통신 단자함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됨. 또한,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자,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 (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 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저층부와 고층부(외벽의 리브 형태 및 지붕 모양 등) 및 부대 복리시설의 색상과 형태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부대 복리시설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시공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 설치되는 품목 중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과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달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됨.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영상은 분양승인 전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추가선택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개발계획 및 단지 외부여건]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단계별(현재 1,2,3단계)로 진행 중에 있으나,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조정 및 부지조성공사 착공(준공)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이에 따른 당 사업지의 설계상의 일부 변경사항이 생길 수 있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및 국가기관으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택지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대지지분 소유권이전이 지연 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현재 공사 중으로서 입주 후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주차장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학교용지 등의 개설과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 교통장애, 기타 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전면조망, 생활권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시설, 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우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서측 : 폭 22M, 북측 : 폭 22M, 동측 : 폭 19M)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진동·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변도로에 의해 단지 진출입시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공급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등에 문의 확인하시기 바람.
- 인근 상업시설, 공동주택, 고등학교(예정) 등 으로 인해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당해 지구 내 기타용지(근린생활용지, 주차장용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사전당첨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인접대지, 보행자도로, 연결녹지 등의 계획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가로등, 공원,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전력,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음.
- 본 지구 북측에 오산공항이 위치하며, 동측에 경부선 철도가 접하고 있어 철도시설로 인한 조망 및 철도,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기소음의 경우 항공기 운항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여 항공기 운항내용(종류, 운행횟수 등)에 따라 기준 소음도를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에 탄약고 2개소(알파, 매그넘)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외로 이전(국방부 시행) 예정이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주택 입주 시 탄약고가 보일 수 있으며, 탄약고 이전 전까지 계획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육군 2개 부대가 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며, 통합이전계획에 따라 지구 내로 이전(군용지) 협의 중에 있으나, 이전시기 미정으로 주택 입주시 군부대가 보일 수 있음.
- 지구 내 하수처리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지구 남측에 계획된 통합 하수처리장(신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통합처리 및 이전시기 등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입주시 기존 하수처리장이 존치하며 악취가 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남측 신풍제지 공장은 소유자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나 공장이전 지연에 따라 연결도로 등 개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연기 및 악취가 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하천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하천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협의 중에 있어 입주시까지 하천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천 정비 이후에도 사업지구 외부에서 유입되는 하천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 오염으로 인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에 따라 철도변 완충녹지 방음벽 설치계획되어 있으나 설치위치가 철도공사에서 설계진행 중인 수원발 KTX노선(안)과 중첨됨에 따라 노선확정(시기 미정) 결과에 따라 설치 주체 및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철도변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서정리역 서측 주차공간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외에 위치하여 개·보수 계획이 없으며, 해당 토지 및 시설물 관리권자(철도공사 및 평택시)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송전탑이 위치해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추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송전탑의 이전 공사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사업지구 내 위치한 송전선로는 향후 지중화될 예정이며 현재 토지이용계획 상 반영된 변전소 및 케이블헤드 부지 이외에 추가 케이블헤드 부지가 반영될 수 있음.
-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을 위한 가공 송전선로 신설철탑 등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계획도로 하부에 송전선로 경과지(지하매설물)가 반영될 수 있음.(정확한 위치와 규모는 현재 미정이며, 변전소, 케이블 헤드 및 경과지 등은 향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업무용지 중 공공업무용지(현재 업무6)는 평택시청 및 시의회 부지로 예정되어 있으나, 관할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토지 매입 및 입주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사업지구 인근 중심상업용지 예정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내 국제교류단지를 포함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 추진계획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본 청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지 위치는 도로소음에 직접 노출된 지역으로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입주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는 당해 지구가 사업진행지구이며 입주 후 주변단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해 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당해 지구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와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인근 도로 및 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부대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 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 녹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주차장용지, 상업시설용지, 업무용지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및 생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주변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교육시설 관련]

- A-50BL 공동주택 입주 초등학생은 고덕함박초(2025.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임. 단,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입주 전년도에 확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 A-50BL 공동주택 입주 중학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는 민세중(2023. 3. 개교), 해창중(2024. 9. 개교), (가칭)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이 있음.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추첨방식으로 배정되며, 중학군(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 A-50BL 공동주택 입주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개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2개교에 배치될 예정임.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신설이 가능하므로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 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 예정 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u>*</u>	율포초(고덕1초)	2023. 9.
	종덕초(고덕2초)	2020. 3.
	민세초(고덕4초)	2024. 9.
	고덕초(고덕10초)	2022. 3.
	해창초(고덕11초)	2024. 9.
	고덕함박초(고덕13초)	2025. 3.
중	민세중(고덕3중)	2023. 3.
	해창중(고덕8중)	2024. 9.
	고덕9중	2027. 3.
고	송탄고(고덕3고)	2025. 3.

[설계 및 단지내부여건]

- 단지 차량 출입구는 1621동 북측과 1623동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1621동 3,4호 라인 북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과 야간조명에 의한 빛반사 등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차량주차, 문주 등의 설치로 인접세대에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과 달리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단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동별 주차 배분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동별 주차대수, 동출입구 개수, 출입동선 길이 등)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승강기 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음.
- 주차 구획은 각 동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주차 대수가 일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 터파기공사 시 암으로 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있을 경우 지하주차장 차량대수를 타동으로 변경배치 및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설비가 총 50개소(이동식충전소 없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코어별 1개소 설치(총 17개소)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하향식 피난구 인근에 소방차 전용 주정차공간이 구획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는 동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근린생활시설 건물, 외부 놀이터 및 운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소음발생 및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시설물 및 이용자, 차량에 의한 각종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인접 동,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내 설치되는 수공간의 겨울철 관리 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레벨차, 도로 및 보도 선형, 폭, 시설물의 위치, 규모, 내부구조, 공용부분(동 현관,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홀 등) 및 부대복리시설의 인테리어, 외부색채, 마감재계획 등은 실제 시공 또는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커뮤니티시설 등)의 형태, 창호 등의 계획은 착공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분양 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및 세부 구획이 조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휀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내부 및 단지경계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비상차로 포함)의 경사도는 시공시 주변현황 및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동 저층세대는 단지 내 비상차로 등 법적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쓰레기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등이 노출되어 인접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단지 내 비상차로 선형 및 경사도는 주변현황,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저층부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모형을 확인하여야 하며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변경 등 추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기 바람.
- 단지 주출입구에서 주동 출입구까지 장애인 접근 가능한 도로,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레벨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동 저층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현관 및 장애인경사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비상자동차 동선 및 주차구획 등 법적 설치 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필로티가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세대는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계단, 승강기, 복도 등에 면하고 있어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채광 창의 위치 등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 환기 등 여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비상용/피난용 포함), 계단실 및 샤프트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 최상층엔 엘리베이터 기계실이 설치 되어,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최상층 세대, 외부와 접하는 측세대는 단열재가 시공이 되나, 타 세대 대비 냉난방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동별 엘리베이터 설치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됨.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옥상,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의 부담임.
- 주동 옥상 및 옥탑의 디자인 형태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사용이 불가하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 주동 저층부 마감은 석재마감(필로티 내부 제외) 및 도장마감 적용 예정이며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상위 지침변경,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단위세대/공용부의 창호 및 난간의 제작사, 사양, 위치, 크기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옥외시설물 및 사인물 등은 인허가 과정 및 당사 기준 변경, 본공사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저층부 석재시공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동현관 및 필로티출입구,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당사 특화계획과 디자인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동 옥상 및 구조물의 형태, 색채, 입면 등은 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일부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문주계획은 당사의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인근에 위치하는 세대는 단지주민이용과 통행 등에 따른 빛(야간조명 효과 등), 소음, 진동 및 시각적 간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용객 편의 및 안전을 위해 시공과정에서 휀스 등 시설물이 별도로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됨. 또한 실시공 시 제공집기는 원칙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각종 홍보물 및 광고물에 표기된 집 기 및 마감재 등이 설치 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동 하부에 설치된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한 소음,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은 출입동선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으며, 출입구의 위치, 출입을 위한 복도, 지하 주차장 방면 출입구 등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커뮤니티시설 등) 및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공간)을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 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 관련시설(실외기 등)은 별도 실외기실 구획하여 설치됨에 따라 통행 간섭 및 소음, 진동,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시 위치, 형태,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세대는 빛반사,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침해 등이 발생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조경 및 시설물의 경우, 당사 디자인특화계획 및 시공여건, 인허가 등에 따라 디자인, 형태, 크기, 색채,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입체적 단지조화 고려 및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조경시설물의 조경선형, 포 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관련 팸플릿,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의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진능력을 공개함.
- (단, 추가지반조사 및 실시설계를 통해 지반종류 및 내진설계범주, 반응수정계수는 변경될 수 있음.)

유효 지반가속도(S)	지반종류	중요도 계수(l _E)	내진설계범주	내진등급	반응수정계수(R)
0.18	S4	1.2	D	0.207	4.0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내진능력은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0.207g 임.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단지주변 지상에 설치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인접되어 설치 및 미관상 저해될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각 동의 일부 세대는 가로등, 조경등, 경관조명 및 전기선로, 통신선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난방은 지역난방 방식임.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및「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옥외안테나 설치위치 : 옥상층 : 1621동, 1624동, 1626동, 1628동
- 중계장치 설치위치 : 1. 옥상층 : 1621동, 1624동, 1626동, 1628동 2. 지하1층 : 1626동, 1630동 제연휀룸 3. 지하2층 : 1625동, 1630동 각동 통신실
- 태양광패널의 설치예정위치는 1621동, 1624동, 1625동, 1626동, 1628동, 1630동의 옥상층에 설치예정이며, 준공시 설치예정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어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LG U+의 IoT서비스는 입주지정기간 게시일로 부터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예정임.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에서 세대내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및 무인택배 등의상태조회 및 제어가 가능하며, 공기청정기(환기), 에어컨 등 loT호환이 되는 스마트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춤.
- 기본으로 제공되는 세대내홈네트워크연동기기(조명, 가스밸브제어, 난방제어 등)외 스마트 가전제품(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은 소비자가 LG U+ IoT와 호환되는 회사 및 모델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별도로 구매하여야 연동이 가능함.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고 (통신사 무관),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 U+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J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 U+의 사업정책에 따라 6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주)LG U+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모델하우스 및 홍보물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미구현 또는 성능 개선 등 서비스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주차장 관련]

- 진입통로의 높이는 2.3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뤄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통하여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차램프 진입부분 및 통로의 유효높이는 지하1층 2.3m, 지하2층 2.7m이며,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2.1m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공 시 각종 배관설치 등으로 일부구간 유효높이가 변경 될 수 있음.
- 주차장은 공동사용이며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및 배수 트렌치는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각 지자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조례 및 관할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될 예정으로 설치수량 및 종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방법 등은 입주 예정자가 결정하여야 함.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과 지하층 E/V홀,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 및 계단실은 대기환경 (온도차 등)의 영향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1~2층 총 2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구는 단지 북측과 동측으로 진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차단기의 기능, 모양, 색상등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지하층 출입구는 주동별로 디자인, 동선, 통로길이, 통로폭, 주동출입방법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연결되는 동이 있음.
- 지하주차장은 동선/기능/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 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형태로 진입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여건에 따라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까지의 동선거리, 주동 출입 방법 등이 다름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까지의 동선, 거리, 충전시설의 종류,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 등 기타 장비의 주기적인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모든 주동들이 연결된 구조로 주차대수 및 동별 주차배분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 조명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관, 배선 및 휀 등의 설비가 노출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휀이 설치되며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이용 시 급배기풍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구로 인해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환기용 그릴과 제연휀룸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 시 시공성 및 성능개선 향상 등의 이유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으로, 주동 주차의 형평성 및 주차계획에 대해 입주민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차주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50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별 주차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50대)에 대한 운영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충전시설의 충전방해로 인한 민원발생시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편물 수취함은 지상 1층의 출입구 근처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본 공사 시 위치 및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
-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으며, 물고임 또는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임.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않는 주택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세대를 샘플하우스로 지정하여 샘플시공 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 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별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붙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고급형 드레스룸 옵션 선택 시 벽판넬형 시스템 선반 위치에는 도배 및 걸레받이가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미선택 시 하부장이 설치됨.
- 세대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평면배치 상 불가피하게 엘리베이터와 벽체가 접하는 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 강이 필요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유리, 창틀)의 사양 및 규격,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난간과 창호샷시, 유리의 사양 및 형태는 기능 또는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 시공 시 형태,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동체감지기는 1,2층, 최상층에 한하여 설치됨.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 및 높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가스배관은 주방 다용도실 내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 옵션을 통해 인덕션을 설치한 세대의 경우 세대내 가스배관은 노출형으로 시공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상 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 등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내 바닥의 단차 높이는 배수배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사리 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는 배수를 위한 설비 등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우배수 이중관 등) 및 바닥 드레인은 천정 또는 벽에 노출 설치되며 소음 발생 및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실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개별 에어컨 설치 등으로 인해 실외기실 내부에 실외기를 2단으로 설치 할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과열로 인한 실외기 작동 중단, 실외기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실외기용 차단기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설치를 불가함.
- 실외기실은 에어컨 가동 시 발생한 응축수 및 우천 시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한 관리(청소 등)는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해야 함.
- 주방 씽크장 하부에는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됨.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는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세탁실 및 발코니는 비 단열 공간으로 세탁실 등에 설치된 수전, 배수관 등이 겨울철에 동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주방 씽크장 등 고정 가구장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됨.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부속이 노출됨.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 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환기용 급배기 슬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탁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임.
-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내부순환모드(공기청정모드)가 지원되지 않음.
- 하향식 피난구 부분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인·허가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하향식 피난구(관계법령에 따라 화재 등 긴급 피난시 상부세대에서 하부세대로 하향식 피난구가 개방되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아래 세대로 피난이 되는 구조)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공간의 외기에 노출되어 있으며 피난구의 설치 위치는 충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는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가 필요함.
-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며, 각 동별로 계단실, 엘리베이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타일, 알판, 인테리어 판넬 등 마감공사에 의해 견본주택보다 벽 두께가 다소 변동될 수 있음.
- 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 및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음.
- 단위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크기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에도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내외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 스스로 환기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단열재 설치 요구 및 결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새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동일평형이라도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피난 대피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의 경우 발코니 확장여부와 관계없이 비 난방 공간임.
- 각 세대의 E/V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실시공시 세대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목문, ABS도어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예: 무늬재, 천연석재, 타일 등) 천연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 동일한 타입의 일부 해당세대는 배치상 측벽세대 또는 간벽세대의 외벽 단열재 시공 유무에 따라 실외기실, 대피공간의 가로 폭과 바닥면적 실외기실 창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미확인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바닥에 사용되는 마루자재는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는 실제 또는 제품 간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람.
- 당해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발코니 선홈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복도 또는 기타 외부에 세대분전반, 세대 통신 단자함이 개별 설치되거나, 발코니에 드레인 및 선홈통이 견본주택과 달리 위치나 개수 등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향후 소음, 세대 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후드렌지 상부의 가구장내부에는 법적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바 이로 인해 가구 폭 및 일부 공간 사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세탁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설치 또는 상층 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 천장 설치 또는 두가지 모두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같은 주택 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승강기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사용자재가 천연석재일 경우 자재의 특성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는 실제 또는 제품간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재(마루 자재, 주방 상판, 아트월, 강화대리석, 인조대리석, 도배지, 시트지 등)는 시공방식 및 도색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고, 자재 특성상 이음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와는 무관함.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됨.
- 「주택법」제54조 제7항에 의거 동법 동조 제6항에 따라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선납할인 및 연체 안내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는 선납할인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간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의 이자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대금(중도금, 잔금)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공급계약서 제5조 2항에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료 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주택법」제48조의2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제59조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2025년 09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전에 입주 가능일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커뮤니티(실내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룸 등), 근린생활시설 등
- 부대복리시설 내 일부 공간은 입주관리서비스의 A/S 센터로 일정기간 사용되며, 입주자는 이에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시행 • 시공사		ul¬
		구성원 1	구성원 2	비고
	상 호	주식회사 모아종합건설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161, 3층 (운암동, 모아미래도빌딩)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7, 9층 901호 (보정동, 하이프라자)	
	법인등록번호	205911-005185	110111-0222218	

■ 홈페이지 주소: http://www.고덕미래도파밀리에.kr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86-2

■ 분양문의 : ☎ 1555-4100 (㈜모아종합건설 : 062-520-0101, 신동아건설(주) : 02-709-7114)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